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4. 12. 12

개정 2026. 4.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적응력 확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운영지침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정부가 지원사업을 위한 에너지공사 및 기후위기적응공사, 그에 따른 추가지원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에너지성능개선”과 “기후위기적응”, “추가지원”은 다음 각 목을 말하며, 지원사업 기술요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요소를 말한다.

가. “에너지성능개선”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

는 공사로, 별표 2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기후위기적응”이란 외부 기후 환경(폭염, 홍수 등)에 대응하는 기술로, 별표 2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추가지원”이란 에너지성능개선 및 기후위기적응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부대공사와 설계, 감리 등 기타공사로 구분한다.

3. “사업대상기관”이란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 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선정기관”이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종합형사업”이란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사업 방식으로 시그니처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한다.

6. “시그니처사업”이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적용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일반사업”이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종합형사업 건축물 중 시그니처 사업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8. “맞춤형사업”이란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사업 방식을 말한다.

9. “군집형사업”이란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 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10. “일반건축물”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합계(복합건축물 및 임차건축물의 경우, 지원받는 바닥면적의 합

으로 한다)가 300m²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1. “소규모건축물”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합계(복합건축물 및 임차건축물의 경우, 지원받는 바닥면적의 합으로 한다)가 300m²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12. “군집건축물”이란 동일 필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군집한 경우를 말한다.

13. “복합건축물”이란 여러 용도가 한 건축물에 복합적으로 혼재된 경우를 말한다.

14. “임차건축물”이란 사업대상기관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섬지역”은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운영지침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한다.

16. “사전컨설팅”이란 건축물의 현장조사, 도면검토 등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술요소의 우선순위 적용, 사업비 산출,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산”이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1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제4조(운영기관) 본 사업의 운영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그린리모델링 센터’라고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시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현장 확인 등 사업의 특정 부분을 협회, 기업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체계) ① 사업대상기관 및 사업선정기관이 기초지자체의 경우, 희망건축물 수요조사, 사업신청, 사업관리, 사업정산 등에 관하여 반드시 광역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광역시·도가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상기관 및 사업선정기관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총괄부서를 반드시 지정하고 내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사업대상기관 및 선정기관의 총괄부서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기후위기적응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선정기관에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에 있어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기관은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운영고시' 제5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장 희망건축물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제8조(희망건축물 수요조사)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해당연도 사업 개시 전 사업대상기관에게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필요시 희망건축물을 자체 발굴할 수 있다.

제9조(희망건축물 사전컨설팅)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제8조에 따라 접수된 희망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사전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통해 사업대상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지원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서울·중앙·공공 50%, 그 밖의 지자체 70%)로 한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연면적 합계 기준(복합건축물 및 임차건축물의 경우, 신청하는 바닥면적의 합으로 한다)으로 산정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의 1.2~2배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중 종합형사업 및 맞춤형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최대 100억(보조금 지원금액 기준 서울·중앙·공공 50억, 그 밖의 지자체 7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 중 군집형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군집형 건물이 2~3동인 경우 : 214억(보조금 지원금액 기준 서

울·중앙·공공 107억, 그 밖의 지자체 150억)

2. 군집형 건물이 4~5동인 경우 : 356억(보조금 지원금액 기준 서울·중앙·공공 178억, 그 밖의 지자체 250억)

⑤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별표3을 따른다.

⑥ 보조금 지원범위는 에너지성능개선과 기후위기적응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설비·전기·소방 부대공사의 경우, 지원사업으로 수반되는 부대공사비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사업과 무관한 공사(배관신설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지원사업으로 증·개축, 대수선 등 인허가가 발생할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만 공사비의 지원은 가능하나, 최대 추가지원비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제11조(보조금 지원조건) ① “종합형사업(일반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에너지성능개선 항목 중 건축공사 기술요소 1개소를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적용하고, 기후위기적응 항목 중 최소 1개소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형사업(시그니처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 1항의 조건 적용 및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인정하는 선도기술 1개소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호 중 최소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최초 준공 이후 아래의 보수이력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로 각 목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 중 에너지성능개선 공사(순간온수기, BEMS, 기타공사 제외) 시행 이력 또는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전체 교체 물량 중 50% 이상 진행하거나 예정인 것에 한하며, 시행

계획 미준수 시 사업취소 가능

나. 건축물을 증축하여 증축 외 부분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 1차에너지소요량이 $200\text{kWh}/\text{m}^2\cdot\text{y}$ 미만으로 공사 후 에너지 절감율이 3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인 건축물 이거나, 그린리모델링 공사 후 1차에너지소요량이 $130\text{kWh}/\text{m}^2\cdot\text{y}$ 미만인 건축물

3. 건축물 용도별, 기능별 특징 등에 의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일부만 수행하거나, 한 가지 요소에 특화하여 수행이 필요한 경우

④ “군집형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물 동당 제1항의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전체 유형별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대비 에너지성능개선비의 비율은 최소 40%이상

2. 총사업비 대비 기후위기적응비의 비율은 최대 30%이하

3. 총사업비 대비 추가공사비의 비율은 최대 30%이하

제12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로써,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사업연도별 공고문에 공고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건축물 중 군집건축물, 복합건축물, 임차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군집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의 주용도(해당필지 내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복합건축물은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만 지원 가능. 다만,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 또는 사

업지원대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3. 임차건축물은 임차기간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만 5년 이상 잔여 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 면적 중 제1항에 따른 지원 용도에 한하여만 지원 가능

③ 이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2. 복합건축물로서 이전에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사업선정 및 관리

제1절 사업공모 및 지원건축물 선정

제13조(사업공고)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신청자격
4. 선정방법
5. 사후관리 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을 시행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라고 한다)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13조의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2항의 신청서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대상기관에서 “군집형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1항의 신청서와 같이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시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종합형사업(일반사업) : 에너지절감 요소와 건축물 노후도, 사업성 및 적정성 등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계량화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종합형사업(시그니처사업) : 제1호 일반사업 배점기준표 점수의 40%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정성평가 6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맞춤형사업 : 맞춤형 배점기준표 점수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건물특화형인 맞춤형사업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요소는 평가하지 않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정

4. 군집형사업 : 제1호 일반사업 배점기준표 점수의 40%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일반사업 배점기준표 점수는 각 건물별로 산정 후 산술평균하여 반영

③ 제2항의 배점기준표와 정성평가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공고문을

따른다.

④ 제2항으로 평가한 점수가 동일 순위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1.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량이 많은 경우 우선
2. 공사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이 높은 경우 우선
3. 신규 지원대상용도에 따라 우선
4. 기후위기적응 기술 반영 개수가 높은 경우 우선
5. 사업대상기관에서 소유하는 건축물 우선
6. 그린리모델링 요소 합산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7. 사업관리 감점이 없는 경우 우선
8.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보조금 교부)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선정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및 교부조건을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그린리모델링 센터 및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③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업선정기관에게 e나라도움을 통하여 1차·2차 분할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린리모델링 센터장이 보조금 교부의 시급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분할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군집형사업의 보조금은 2차년으로 나누어 교부하며, 1차년도 50%, 2차년도 50% 교부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선정기관이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서 허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선정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선정기관은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제15조에 따라 대상선정 이후에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조금법」 제21조에 따른 '사정의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취소의 경우는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정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상 선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 사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상 선정 이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아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3. 대상 선정 이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대상 선정 이후 대상 시설물의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라 폐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취소의 사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선정기관이 관계 법령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사업선정기관이 보조금을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사업선정기관이 지원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6. 사업선정기관이 동일 공사내역에 대하여 타 유사 지원사업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교부의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⑤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는 사업선정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지원사업 관리

제18조(설계 및 시공) ① 사업선정기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설계·시공 등 수행을 위해 설계사·시공사 등을 선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접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당초 선정 당시 계획한 에너지 성능 확보 및 기후위기적응을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추진현황보고)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사업선정기관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20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사업선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중대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잔액 또는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적응 및 추가지원 항목을 추가 하려는 경우. 단, 기후위기적응비 또는 추가지원비가 신청대비 20%미만 증가 및 에너지성능개선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로 보고한다.
3. 동일 사업선정기관(기초지자체 단위 또는 중앙행정·공공기관-해당기관) 내의 총사업비의 변동 없이 사업간 또는 유형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4. 기후위기적응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5. 추가지원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6. 기후위기적응비가 신청대비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7. 추가지원비가 신청대비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8.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9.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10. 지원 대상사업을 다른 사업선정기관에게 인계하는 경우
11.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계획은 심의위원회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동일 사업선정기관에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나, 군집형사업은 타 유형(종합형, 맞춤형)과 사업비 전용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맞춤형사업은 신청 당시의 그린리모델링공사 기술요소를 제외 또는 물량조정(실제 면적에 따른 물량조정은 가능)하거나, 신청 당시 기술요소 외 신규로 기술요소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

⑤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변경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 그 결과를

사업선정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업선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1조(중대한변경) ① 제20조제1항제1호의 중대한 변경이란 에너지성능 개선비가 20%이상 감소하거나 에너지성능개선 적용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경미한사항) 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성능 변동이 미미하는 등 효율적인 변경(이하 '경미한 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검토·승인 후 심의위원회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총사업비 초과 또는 현장여건 등으로 공사내역 또는 공사 범위 조정시 다음 각 목의 경우. 단, 맞춤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가. 복합건축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조정
나. 비냉난방 공간 부분의 조정

다. 해당 공사의 전체 면적(실시 설계 후의 면적 기준으로 한다)의 5% 이내 감소. 다만, 모든 에너지성능개선 기술요소(공사물량을 면적으로 산정하는 공사에 한함) 면적 조정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에너지성능개선 내역 조정으로 사업 신청 당시의 에너지 절감계획이 개선되거나, 5%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미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타사업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에너지성능개선을 동등 이상으로 계획 또는 시행한 경우. 이로인하여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21조제1항의 에너지성능개선비가 20%로 감소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4. 기후위기 적응 및 추가지원비가 신청대비 20%이상 증가하나, 총 공사비의 30%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제1호에서 제3호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의지원)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선정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선정기관에게 사업 추진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선정기관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보조금집행) ① 사업선정기관은 보조사업 목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③ 사업선정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사업선정기관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지원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제25조(사업완료확인)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실제 공사내역을 반영하여 에너지 성과분석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한 설계도면·공사내역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26조(사업비정산) ① 사업선정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선정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선정기관은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 정산보고서의 검증, 특정 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정산자료 검토가 완료되면 사업선정기관에 정산 결과를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는 정산 잔액 등에 대하여는 사업선정기관에 사업비 잔액과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지정한 계좌로 반납 요청하며, 사업선정기관은 반납요청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 하여야 한다.

⑥ 사업선정기관은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⑦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중요재산보고 및 공시) ① 사업선정기관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중요 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고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작성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 ① 사업선정기관은 제25조의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용도

의 사용, 휴·폐업,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및 철거의 행위가 제한된다.

② 사업선정기관은 처분제한 기간 내 제1항의 행위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전 장관의 사전 승인 또는 사전협의(사업선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한다)를 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사업선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선정기관이 장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중요재산을 처분 한 경우 장관은 기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9조(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 기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선정기관에 공사 전·후 전기, 가스, 난방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선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에 대한 실적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4.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7.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8. 제26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9. 기타 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장관에게 보고, 장관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1조(소유권의 이전) ① 사업선정기관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에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반 시 제재사항)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선정기관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업대상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통보)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제9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린리모델링 센터에 별지 제10

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의보관) 사업선정기관은 지원사업의 신청, 수행, 정산 등 사업 전반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유지 의무) 운영지침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사업에 관련된 기관 등은 관련 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 2024. 12.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 선정기관은 선정 당시의 지원사업 공고문 및 가이드라인(이하 '공고문'이라 한다)과 운영지침이 상이한 경우, 선정 당시의 공고문을 따른다. 단, 제20조부터 제22조 및 [별표2]의 경우 이 지침을 따른다.

부 칙 < 2026. 4. 2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2025년 이전)은 개정전 지침을 따른다.

[별표 1] 지원사업 기술요소

구분		기술요소
에너지 지성 능 개 선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 외기에 직·간접하는 창호의 경우, 창호기밀 필수포함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히트펌프 등),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기후 위 기 적 응	홍수· 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역류방지밸브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침수시설, 저류시설 등), 누수침수 센서 등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등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일사조절장치,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 혹한 기타 (가뭄, 지반침하 등)	열선포장(지붕, 진입로 등), 스노우가드 등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집수·여과·저장),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 확보 검토 등)
추 가 지 원	부대 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및 기후적응 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별표 2] 지원사업의 기술요소에 대한 기술기준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에너지성능개선	고성능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고성능 창호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 창호 공사의 경우 창호기밀공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창 및 문 등 개구부와 구조체의 접합부위(개구부 둘레)에 기밀테이프, 팽창테이프, 또는 탄성도막(가변형방습) 제품 사용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거실의 창 및 문)의 둘레에 적용하는 제품은 공기투과성 및 투습성이 낮은 제품으로 적용하며, KS F 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에 따른 등가공기층두께(Sd)가 2m를 초과하는 제품 사용 • 기밀테이프는 투습방수 기능을 하는 실외측 기밀테이프와 방습기능을 하는 실내측 기밀테이프를 제품 특성(시방서)에 맞게 적용, 건축물 구조에 따라 친환경 접착제 등 적절한 부자재 활용 * 단, 창 및 문공사를 필수공사로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공사를 인정하며, 위 기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GR센터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가능
	고기밀성 단열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방풍실 또는 방풍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내·외부 단열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경우 기존 단열재의 열저항값 산입 가능 *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실내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 권장) * 외부 단열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단열공사(내·외부 단열보강 참고) •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 전기온돌난방공사(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KS B 6879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 이상인 제품 * 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60% 이상, 난방시 80% 이상인 제품 • 공기조화기 부착형 폐열회수 설비(Plate, Rotary, Heat Pipe 등)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냉동기, 보일러, 냉난방기, 열원용 펌프 등) * '규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의 개수와 종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예.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 규정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기자재별 적용범위
	고효율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LED조명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거실 조도 조성용이 아닌 특수 조명인 경우에 한하여 LED조명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가능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
	B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MS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1의2]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을 갖춘 시스템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함 (단, 난방유 등 비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에너지원에 한하여 제외 가능) * 데이터 조회기능 :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순간온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 B 8116에 따른 가스 순간온수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전기식 순간온수기 * 축열 용량 30L 이하만 순간온수기로 인정하며, 30L 초과는 고효율냉난방기 참조
	Cool Roof (차열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KPIC 5020-7316에 적합한 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인증 제품 •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
	절수형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환경성적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선언 제품	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기 후 위 기 적 응	물막이설비 (차수판, 차수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적합한 높이, 성능, 종류 등 만족하는 제품 * 자동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 필요
	자동침수 방어벽	-
	역류방지밸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에 따른 역류방지밸브 KS B 2308 볼밸브
	집수정과 펌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집수정과 펌프장치 설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함. 집수정의 크기는 직경 450mm 이상이어야 하며, 깊이는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필요 집수정의 사용 장소는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거 가능한 뚜껑을 설치하여 타일이나, 철판,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의 재질로 만들어야 함. (집수정 바닥은 단단하고 펌프용 영구 지지대 설치) 배출관은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유도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5조에 따른 유도수로 설치
	침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4장에 따른 침투시설(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부록2에 따른 침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설치 필요
	저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3장에 따른 건축물 저류 시설(지하저류조, 저류탱크, 옥상저류, 저류형 화단, 배수측구 저류시설)
	누수침수 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KC 인증 제품이며, ICE 60529 표준에 따라 IPX7 이상인 제품
	고강도 내풍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 F 2296에 따라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으로 검증하여 만족하는 유리 및 창호 제품
	자동폐쇄식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 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조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식재) 공사로서 교목,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것(지피식물과 초화류로만 구성된 조경공사는 제외)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설계기준(KDS 34 10 10)에 따른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등
	그린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 벽면녹화(실외)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반 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으로, 「조경기준」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구조물 설치 필요 *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
	일사조절 장치 (변동루버, 옥외차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것 외부 블라인드(베내시안, Roller 등)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열선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스노우가드	-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구조 안전보강 (내진 등)	-
추가 지원	건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 조사 및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기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별표 3] 지원사업의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1) 종합형 사업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종합형 (일반 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10만원 / 3.3㎡ (252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94만원 / 3.3㎡ (352.8만원 / 3.3㎡)	70 %
종합형 (시그니처 사업)	일반·소규모 건축물	서울, 중앙·공공	400만원 / 3.3㎡ (48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560만원 / 3.3㎡ (672만원 / 3.3㎡)	70 %

※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음

2) 맞춤형 사업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맞춤형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10만원 / 3.3㎡ (252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94만원 / 3.3㎡ (352.8만원 / 3.3㎡)	70 %

※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음

3) 군집형 사업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군집형	건물이 2~3동인 경우	서울, 중앙·공공	175만원 / 3.3㎡ (21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45만원 / 3.3㎡ (294만원 / 3.3㎡)	70 %
	건물이 4~5동 이상인 경우	서울, 중앙·공공	175만원 / 3.3㎡ (21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45만원 / 3.3㎡ (294만원 / 3.3㎡)	7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건축물명		한전고객번호	(에너지정보수집용)	
주 소		PK번호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유형구분	<input type="checkbox"/> 종합형 <input type="checkbox"/> 맞춤형 <input type="checkbox"/> 군집형			
용도구분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시설(유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시설(직업훈련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시설(학원·교습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시설(독서실·기원) <input type="checkbox"/> 경로당 <input type="checkbox"/> 노인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노유자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자활센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성매매피해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공공시설(어린이회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시장 <input type="checkbox"/> 수련시설			
소유현황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임대 (임대기간 0000 ~ 0000) * 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서 필수 추가제출	소유주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총괄부서	소 속	성 명		
	전 화	이 메 일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이 메 일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m ²)	규모(층수)	지하 층 / 지상 층	
	연면적(m ²)	사용승인연도		
	신청면적(m ²)			
	도서지역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중복지원 건축물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군집시설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주용도:)	
	복합용도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사업대상 용도면적(전용) 비율: %)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사용용도			

예상사업기간		00.00.00. ~ 00.00.00.							
예상사업비용	총액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기본	억원		
						추가	억원		
예산확보금액	총액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비율) %		(비율) %		(비율) %			
추경편성여부	<input type="checkbox"/> 편성 (추경확정예정일 : '26.00.00.) <input type="checkbox"/> 미편성								
기밀성공사계획	<input type="checkbox"/> 창호주변 <input type="checkbox"/> 배관주변 <input type="checkbox"/> 없음								
녹색건축물 전환인정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계량기보급 사업참여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안전점검 이력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최근 5년 이내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 개선	건축	<input type="checkbox"/> 단열(벽체)		<input type="checkbox"/> 단열(지붕)				
			<input type="checkbox"/> 바닥단열 및 난방		<input type="checkbox"/> 창호·문				
		기계, 전기 등	<input type="checkbox"/> 환기장치		<input type="checkbox"/> 냉난방기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순간온수기		<input type="checkbox"/> 조명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에너지모니터링장치(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input type="checkbox"/> 쿨루프		<input type="checkbox"/> 선도기술		<input type="checkbox"/> 건축가설공사		
			<input type="checkbox"/> 절수형기기		<input type="checkbox"/> EPD 마감재				
		기후 위기 적응	홍수 폭우	<input type="checkbox"/> 차수관·차수막		<input type="checkbox"/> 자동침수방어벽		<input type="checkbox"/> 배수설비보강	
				<input type="checkbox"/> 우수유출저감시설(침수시설, 저류시설)				<input type="checkbox"/> 누수침수센서	
			태풍	<input type="checkbox"/> 고강도내풍유리		<input type="checkbox"/> 자동폐쇄식 창문			
	폭염		<input type="checkbox"/> 조경공사		<input type="checkbox"/> 그린월		<input type="checkbox"/> 옥상녹화		
			<input type="checkbox"/> 일사조절장치		<input type="checkbox"/> 옥외 차양구조물				
	대설		<input type="checkbox"/> 열선포장(지붕, 진입로 등)				<input type="checkbox"/> 스노우가드		
	기타	<input type="checkbox"/>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구조안전보강			
부대공사		<input type="checkbox"/> 석면조사·철거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철거 및 폐기물처리, 기타 GR부대공사)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00.00.00.									
신청기관명				(직인)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홈페이지 작성 후 PDF파일로 추출하여 등록 [별첨2] 참조									

[붙임]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기술요소		해당물량	산출금액(원)	비고
에너지공사	건축	벽체	외단열	m ²		벽체면적
			내단열	m ²		
		지붕	외단열	m ²		지붕면적
			내단열	m ²		
		바닥		m ²		난방면적
		창호(기밀시공 포함)		m ²		창호 면적
		문		식		문 면적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m ²		연면적
		고효율 냉난방장치		식		기기용량
		고효율보일러(콘덴싱)		대		대수
		순간온수기		대		대수
	전기	조명(LED)		m ²		연면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m ²		설치 면적
		에너지 모니터링장치	BEMS	m ²		BEMS/원격검침기 적용면적
			원격검침기	식		
	기타	Cool Roof(쿨루프)		m ²		지붕층 면적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식		선도기술 적용 금액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식		필수공사와 관련된 가설공사만 인정
		절수형 기기	세면기	대		필요대수
			변기	대		필요대수
환경선언 제품(EPD) 마감재		벽지	m ²		설치 면적	
		천장재	m ²		설치 면적	
	바닥재	m ²		설치 면적		
소 계 (1)						

기후 위기 적응 기술	홍수 폭우	차수관·차수막	m ²		설치 면적	
		자동침수방어벽	m ²		설치 면적	
		배수설비보강 (역류방지밸브 등)	대		필요대수	
		우수유출저감시설 (침수시설, 저류시설 등)	m ²		설치 면적	
		누수침수 센서	대		필요대수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m ²		설치 면적	
		자동폐쇄식 창문	m ²		설치 면적	
	폭염	조경공사	m ²		설치 면적	
		그린월	m ²		설치 면적	
		옥상녹화	m ²		설치 면적	
		일사조절장치	m ²		설치 면적	
		옥외차양구조물	m ²		설치 면적	
	대설 혹한	열선포장	m ²		설치 면적	
		스노우가드	대		필요대수	
	기타	빗물저장활용시스템	m ²		설치 면적	
		구조안전보강	m ²		설치 면적	
	소 계 (2)					
	부대 공사	건축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식		
석면 조사 및 제거			m ²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식			
기계		기타 GR 관련 설비공사	식			
전기		기타 GR 관련 전기공사	식			
소방		기타 GR 관련 소방공사	식			
소 계 (3)						
①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소계						

기타 비용	이주 비용	이사 및 임차비	식		
	설계 및 감리	설계비	식		
		설계공모대행	식		
		감리비	식		
	안전 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식		
② 기타비용 소계					
③ 부가가치세(①+②)					
사업비 총계(①+②+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200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공모 및 관리 등록을 위함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소속기관, 부서, 담당지역, 이름,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
- 선택 항목 : 직위, 팩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0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이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 관리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 | | | | |
|----|--------------------------|-----|--------------------------|
| 동의 | <input type="checkbox"/> |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
|----|--------------------------|-----|--------------------------|
- 위의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 | | | | |
|----|--------------------------|-----|--------------------------|
| 동의 | <input type="checkbox"/> | 미동의 | <input type="checkbox"/> |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000년 00월 00일

성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임차건물에 대한 관리대상 확인서 및 임대인 동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리대상 확인서

건축물명			
주 소			
사용승인일		연면적	
사업년도		건물용도	
소 유 주	(전화 :)		
관리	관리주체		
	관리내용	(전화 :)	

200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라 00000장이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로 향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할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인)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귀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군집형사업」 추진계획(안)

□ 대상 건물 현황

건물명	연면적(m2)	규모(층수)	사용승인일	비고
(예시) 00건축물 1동				
(예시) 00건축물 2동				
현장사진		현장사진		
(예시) 건물 입면 또는 설비기기		(예시) 건물 입면 또는 설비기기		

□ 사업추진계획(적용기술요소)

건물명	에너지성능개선	기후위기적응	추가지원
(예시) 00건축물 1동	(예시) 벽체 외단열, 창호, 냉난방공사	(예시) 일사조절장치	-
(예시) 00건축물 2동	(예시) 벽체 외단열, 창호, 폐열회수형환기장치	(예시) 옥상녹화	(예시) 석면제거

□ 재원 조달계획

구분	총사업비(백만원)	재원구분		지방비 조달계획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1차년도	(예시) 500백만원	(예시) 350백만원	(예시) 150백만원	(예시) '00년도 추경예산 반영
2차년도	(예시) 500백만원	(예시) 350백만원	(예시) 150백만원	(예시) '00년도 본예산 계획 반영
합계	(예시) 1,000백만원	(예시) 700백만원	(예시) 300백만원	-

□ 예상 사업기간

구분	사전조율 (공공심의 등)	설계공모	실시설계	시공	준공
일자	(예시) ~'27년 3월	(예시) x	(예시) '27년 3월 ~'27년 8월	(예시) '27년 10월 ~'29년 5월	(예시) '29년 5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수신 : ○○○(보조사업자)

1.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00년 ○○월 ○○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

[별지 제5호서식] 지원사업 취소 신청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취소 신청서

건축물명				
주 소				
사업년도		건물용도		
사 업 비	총사업비	천원		
	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사업기관명				
담 당 자	(전화 :)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 사업으로 지정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아 대상 건축물을 철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 대상 시설물의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라 폐원			
	[] 기타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인)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귀중

유의사항	1. 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별도 첨부 필요 2. 그린리모델링 심의 후 취소 사유에 따라 사업취소가 미승인 될 수 있음
------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사업선정기관: 건축물별 작성]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건축물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총	원	국비	면
			도비	
			시군비	
수행기관			담당자	

2. 주요사업 현황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전체공정률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준공	공사취소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1) 보조금 집행현황(총괄)			
예산액(총사업비)	실집행금액	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 원)

2) 보조비목 및 세목별 집행현황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편성금액	집행금액	비고
건설비	실시설계비	설계용역			
	시설비	건축공사			
합계					

4. 특기사항(부진 사유 등)

○

[사업선정기관: 건축물 취합]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명	예산 (백만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시	00 경로당	700			
	00 사회복지관	2,100			
	소 계	2,800			
합 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구분		금액	
○○시	분기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 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 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

20245.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사업선정기관: 광역에서 기초지자체 취합]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개요

- 보조사업명 : 0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수행대상 : 총 00개 기관, 총 00 동
- 총사업비 : 000 백만원 ○ 총집행금액 : 000 백만원

종합실적

(단위 : 원)

수행기관	건축물수	예산액 (총사업비)	집행금액	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00시						
합 계						

200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사업 사업변경계획서

[건축물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계획서

2000. 00. 00.

[신청기관명]

1. 기본현황

□ 변경개요

구분	내용				
건축물명	ex) OO 어린이집				
사업유형	ex) 종합형사업(일반사업)				
주소	ex) 도로명주소 기재				
연면적/규모	ex) 000m ² / 지하0층, 지상0층	용도	ex) 의료시설/어린이집/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ex) 박OO (000-000-0000)	사용승인년도	ex) '00년	경과연수	ex) 00년 경과
사업비 변동여부	ex) O/X (증액/감액)	필수공사 변동여부	ex) O/X (추가/삭제)	에너지 관련 공사비 감소여부	ex) O/X

□ 사업비 변동

(단위 : 천원)

변경 전(A)			변경 후(B)			변경액(B-A)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383,972	164,560	548,532	383,972	164,560	548,532	-	-	-

- (변경 전) GR사업 선정 당시 사업비 기재(GR창조센터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변경 후) 사업변경 후 사업비 기재

2. 세부현황

□ 변경내용

1. 사업변경 취지
- 사업내용의 변경 배경 ex) 신청된 필수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활용 등
2.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설계변경 후 인허가 절차, 변경된 견적서 확정 후 공사발주 등 ex) 설계중, 설계완료, 공사중(공정률00%), 공사완료 등 ex) '00년 0월 준공 예정 등

3. 변경내용 및 사유

기술요소	변경내용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 성능 개선	벽체 (외·내 단열)	ex) · 외단열공사 적용 (준불연단열재 50T 보강)	ex) · 내단열 변경/동일/ 미적용 · 공사면적 및 공사 비 증가/감소	ex) · 실제 현장 물량 반영 · 단가조정으로 공 사비 증액/감액
	지붕 (외·내 단열)			
	바닥난방	ex) · 바닥난방배관 공 사 적용	ex) · 미적용	ex) · 공사비 부족에 따 른 공사 미적용
	창호 (창호기밀 포함)	ex) · 24mm 로이복층 유리 적용	ex) · 동일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ex) · 미적용	ex) · 적용 (공사면적 기재)	ex) · 낙찰차액 활용하 여 추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 진행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 (콘덴싱)			
	순간온수기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Cool Roof (쿨루프)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기후위기적응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제품 마감재(EPD제품)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			
	우수유출 저감시설			
	누수침수센서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일사조절장치			
	옥외차양구조물			
	열선포장			
	스노우가드			
	빗물저장활용시스템			
	구조안전보강			
	기타 부대공사			

- * 변경 전 항목 작성 시 ‘컨설팅 결과보고서’ 참고(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 *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누수, 균열, 배관 부식 등) 증빙사진 첨부 요망.

4. 세부변동 계획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변경(안)>

(단위 : 천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증감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후-전)	금액 (후-전)			
에너지 성능 개선	건축	벽체	외단열	500 ^{m²}	30,000	250 ^{m²}	15,000	-250 ^{m²}	-15,000		
			내단열								
		지붕	외단열								
			내단열								
		바닥	단열								
			난방개선								
		창호									
	문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보일러(콘덴싱)									
		순간온수기									
	전기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기타	Cool Roof(쿨루프)										
	선도기술 (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 (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 기기	세면기									
		변기									
	환경성 선언제 품 마감재 (EPD제품)	벽지									
		천장재									
바닥재											
에너지성능개선 소계(1)			-		-		-				
기후위 기 적응	홍수 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보강									
		우수유출저감시설									
		누수침수센서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일사조절장치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	열선포장						
		스노우가드						
	기타	빗물저장및활용시스템						
구조안전보강								
기후위기 적용 소계(2)			-	-	-			
부대공사	건축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 및 제거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기계	GR 관련 설비공사						
	전기	GR 관련 전기공사						
부대공사 소계(3)			-	-	-			
도서지역 활증(4)			-	-	-			
직접공사비 소계(1+2+3+4)			-	-	-			
간접노무비			-	-	-			
기타경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①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소계			-	-	-			
기타비용	이주비용	이사 및 임차비						
	설계 및 감리	설계비						
		설계공모대행						
		감리비						
	안전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② 기타비용 소계			-	-	-			
③ 부가가치세			-	-	-			
총 공사비 합계(①+②+③)			-	-	-			

* [참고_세부변동 계획 작성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물량 및 금액 작성요청

000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보고서

사업개요

건축물명		-	사업유형	-
용도		-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유형	-
주소		-		
총괄부서	성명	직접입력	소속	직접입력
담당자	연락처	직접입력	이메일	직접입력
실무	성명	직접입력	소속	직접입력
담당자	연락처	직접입력	이메일	직접입력
그린리모델링 공사범위		에너지성능개선	-	
		기후위기적응	-	
		추가지원	-	
건축면적(m ²)		-	연면적(m ²)	-
준공년도		-	규모(층수)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용도	-	
		실제사용용도	-	
사업기간		설계기간	직접입력	
		공사기간	직접입력	
		총 사업기간	직접입력	
에너지 절감률			00	%

* 초록색 음영 부분은 담당자가 실적보고서 작성 시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물명을 검색하여 사업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사업비 정산

구분	신청금액	최종금액	사업비 증감
국비(원)	00,000,000	00,000,000	=최종금액-신청금액 (자동계산)
	(00%)	(00%)	
지방비(원)	00,000,000	00,000,000	=최종금액-신청금액 (자동계산)
	(00%)	(00%)	
총사업비(원)	00,000,000	00,000,000	=최종금액-신청금액 (자동계산)
	(100%)	(100%)	

* 초록색 음영부분(신청금액, 최종금액)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고, 사업비 증감금액 및 사업비 비율은 자동계산이 되도록 구현

□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신청금액 및 집행금액

구분		기술요소	신청금액(원)	집행금액(원)	증감금액(원)	증감사유
에너지 성 능 개 선	단열	벽체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단열공사 면적 증가
		지붕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바닥난방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창호	창호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문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자재비 증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고효율 냉난방장치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고효율보일러(콘덴싱)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순간온수기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조명(LED)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BEMS(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Cool Roof(쿨루프)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선도기술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건축가설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절수형기기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환경성선언제품 마감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① 에너지성능개선 소계			=에너지성능개선 합계	=에너지성능개선 합계	= 집행 - 설계	
그린리 모델링 비용	홍수 폭우	차수판·차수막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자동침수방어벽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배수설비 보강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우수유출 저감 기술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낙찰차액 활 용하여 설치
		누수침수센서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태풍	고강도태풍유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자동폐쇄식 창문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폭염	조경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그린월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옥상녹화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일사조절장치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대설	옥외 차양구조물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열선포장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기타	스노우가드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구조안전보강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② 기후위기적응 소계			= 기후위기적응 합계	= 기후위기적응 합계	= 집행 - 설계	
부 대 공 사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연동	000,000,000	000,000,000	= 집행 - 설계	
	석면 조사 및 제거	시스템 연동	000,000,000	000,000,000	= 집행 - 설계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000,000,000	= 집행 - 설계	
	GR 관련 살빙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000,000,000	= 집행 - 설계	
	GR 관련 전선공사	시스템 연동	000,000,000	000,000,000	= 집행 - 설계	
③ 부대공사 소계			= 부대공사 합계	= 부대공사 합계	= 집행 - 설계	
④ 그린리모델링 직접비용			= ① + ②	= ① + ②	= 집행 - 설계	
⑤ 기타제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시스템 연동	= 총 공사비- ③	= 집행 - 설계	

기 타 비 용	⑤ 이주비·임차료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예시) - 공사 관리를 위해 감리 비집행
	⑥ 실시설계비용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⑦ 감리비용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⑧ 안전교육	시스템 연동	000,000,000	= 집행 - 설계	
	⑨ 기타비용 소계	= 기타비용 합계	= 기타비용 합계	= 집행 - 설계	
사업비 총계		= [사업비정산]의 총사업비	= ④ + ⑤ + ⑥ + ⑦ + ⑧	= 집행 - 설계	

* 신청금액은 건축물명을 검색하여 사업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실시설계비용, 감리비용은 직접 입력, 기타 금액은 합산하여 자동 등록)

** 초록색 음영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소계 및 총계는 자동계산 되도록 구현

□ 사업 증빙서류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000.pdf
증빙서류(20MB 이내)	000.pdf

* 완료보고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식을 작성하여 PDF로 업로드

** 증빙서류 목록은 버튼 또는 글자를 클릭 시 팝업창으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진대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작성 후 PDF로 업로드(20MB 이내)

□ [참고] 증빙서류 목록

① GR 설계용역 준공 관련 증빙서류

- (자체설계) 계약서류, 도면, 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등

② GR 공사 관련 증빙서류

- (예산집행) 계약서류, 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사업변경) 낙찰차액 사용, 사업항목 변경 등 설계변경 방침공문

- (인증서류) 지원항목 별 인증서, 확인서 등(기준 세부내용 참조)

③ GR 공사 이외의 지원항목* 및 시설개선공사 등 예산집행 증빙서류

- 집행관련 방침공문, 계약서류, 내역서,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이주비, 임차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항목

④ GR 공사 관련 사진대지

- 공사 항목별 전, 후 사진 첨부

* 사진대지 첨부양식 활용

[붙임]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명	예산 (백만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시	00 경로당	700			
	00 사회복지관	2,100			
	소 계	2,800			
합 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지역	구분	금액	
○○시	분기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 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 사유		

가. 예산집행 증빙서류

나.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4.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총보조사업비^{주1)}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a)	지자체 부담금 (b)		자기부담금 (c)	합 계 (d = a + b + c)	보조금비율 (e = a ÷ d)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f)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i = f + h)	수익금		
	전기이월액 (g)	집행액 (h)		발생액 (j)	반환액 (k)	미반환액 (l = j - k)
보조사업비 총액 a의 집행액	전기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f) + 전기이월분 집행액 (h)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 (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 (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 (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m = d - f)	전기이월잔액 (n = g - h)	집행잔액 (o = m + n)	발생이자 (p)	차기이월액 (q)
보조사업비 총액 a - 당기분 집행액 (f)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g) - 전기이월액 (h)을 뺀 금액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r = o + p + k - q)	보조금 반환액 ^{주4)} (s)	지자체 부담금 반환액 ^{주4)} (t)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u = r - s - t)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수익금 반환액 - 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 (수익금 (k) × e) - 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r × e	지자체 부담금 집행잔액 + 지자체 부담금 발생이자 + (수익금 (k) × b ÷ d) - 지자체 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r × b ÷ d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별지 제9호 서식] 처분통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처분통보서

건축물명				
주 소				
사업년도		건물용도		
사 업 비	총사업비	천원		
	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사업기관명				
담 당 자	(전화 :)			
처분내역				
처분사유				

귀 기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운영지침 제33조에 의거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별지 제10호 서식] 이의신청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

건축물명				
주 소				
사 업 비	총사업비	천원		
	국 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사업기관명				
담 당 자	(전화 :)			
처분내용				
처분고지일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위와 같은 사유로 운영지침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인)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귀중

유의사항	1.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별도 첨부 필요 2.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이 미승인 될 수 있음
------	---